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

[redacted]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3,2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. 6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며,

다. 2025. 3. 24.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7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
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